

『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
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,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관련 법 적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당초 : 「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
 - 변경 : 「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-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촉 및 위원 자격 개정 사항 정비(제2조)
-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 자격 조항 삭제(제12조, 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- 상위 법령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‘구미시경리관’에서 ‘민간위원 중에서 호선’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,
-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 자격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제명을 「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구미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, 자치법규의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